

충북대학교-국립한국교통대학교

통합 추진 현황 설명회



충북대학교
CHUNGBUK NATIONAL UNIVERSITY

목차

- 01 통합 추진 경과
- 02 통합 추진 로드맵
- 03 「국립대학 통폐합 기준」 개정안 주요사항 안내
- 04 Q & A

충북대학교-국립한국교통대학교
통합 추진 현황 설명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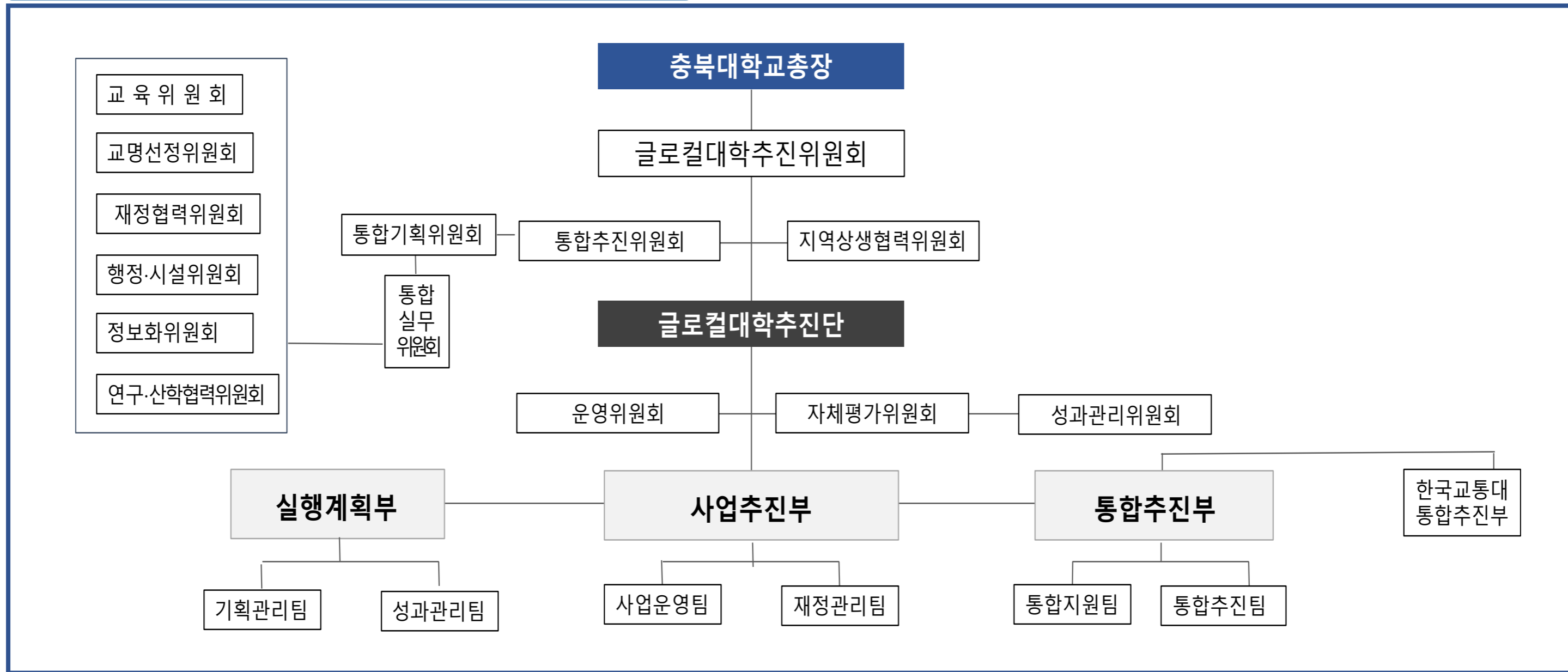
통합 추진 경과

통합 추진경과



글로벌대학추진단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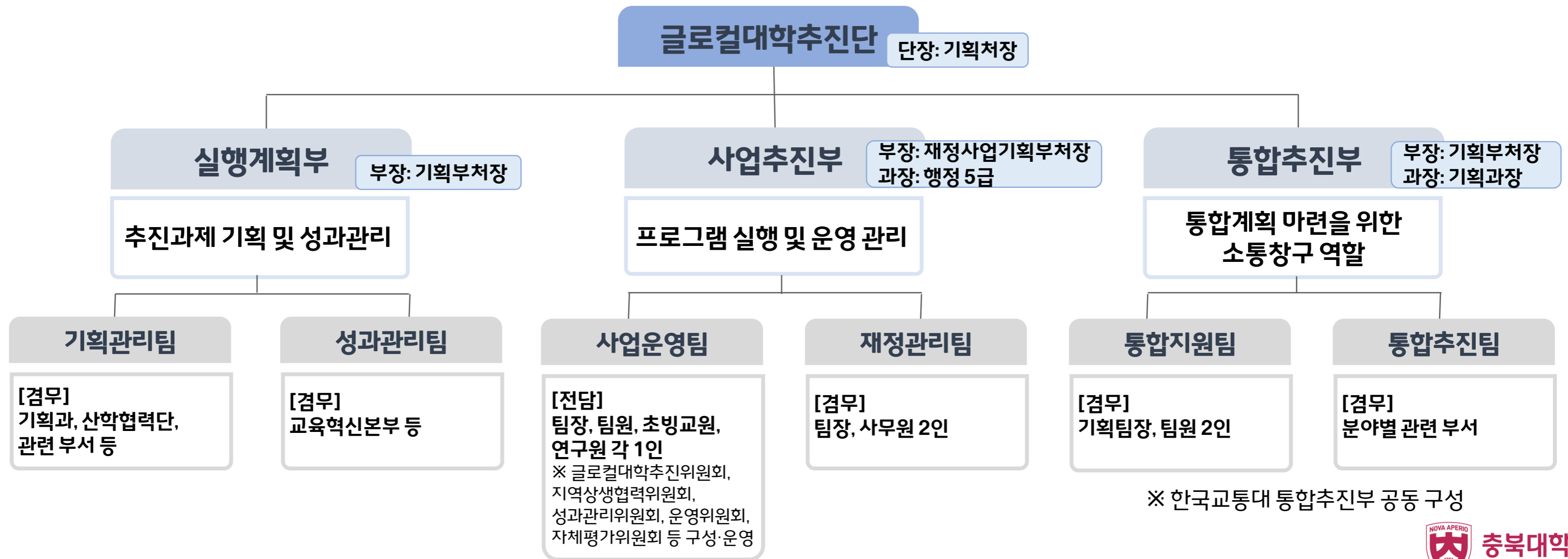
글로벌대학추진단 조직 구성



글로벌대학추진단 구성

기능 사업 추진과제 기획, 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, 통합 관련 주요사항 심의

구성 3개 부(실행계획부, 사업추진부, 통합추진부) 및 3개 위원회(운영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, 성과관리위원회)로 구성



충북대-한국교통대 통합추진위원회 구성

기능

- 대학 통합 관련 주요사항 논의 및 심의
- 통합 기획위원회 심의·조정 사항 논의 및 심의

구성

- (위원장) 교무처장
- (당연직 위원) 대학원장, 학생처장, 연구처장
- (추천 위원) 교수회·직원회·학생회 추천 인원 각 2명

※ 위원은 충북대-한국교통대 동수로 구성

충북대-한국교통대 통합기획위원회 구성

기능

대학 통합 관련 세부사항 도출 및 통합 신청 계획서 작성·검토

구성

- (위원장) 기획처장
- (위원) 교무부처장, 학생부처장, 기획부처장, 재정사업기획부처장, 연구부처장,
입학부분부장, 교무과장, 기획과장

※ 위원은 충북대-한국교통대 동수로 구성

충북대-한국교통대 통합실무위원회 구성

분과별 통합실무위원회 구성

※ 한국교통대와 공동 구성

교명선정위원회

(기능) 교명 선정 관련 대학 내·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, 교명 우선순위 제출

(구성) 위원장: 인문대학장

위원: 대외협력본부장, 학생과장, 교수회·직원회·학생회 추천 인원 각 1명

※ 교명 관련 충북대 내부 TF 구성

교육위원회

(기능) 교무·학사 구조 조정, 유사학과 통·폐합 TFT 운영, 입학정원 조정, 통·폐합 기준 및 캠퍼스

재배치 계획 마련

(구성) 위원장: 교무처장

위원: 대학원장, 교무과장, 학사지원과장, 교수회·직원회·학생회 추천 인원 각 1명

※ 교육 관련 충북대 내부 TF 구성중

연구·산학협력위원회

(기능) 연구 실적 평가 및 연구·산학협력 관련 통합계획 합의안 마련

(구성) 위원장: 산학협력단장

위원: 연구처장, 산학협력부장, 교수회·직원회·학생회 추천 인원 각 1명

충북대-한국교통대 통합실무위원회 구성

분과별 통합실무위원회 구성

※ 한국교통대와 공동 구성



재정협력위원회

(기능) 통합대학 회계별 소요예산 산정 및 관리, 재정 관련 통합계획 합의안 마련

(구성) 위원장: 기획처장

위원: 사무국장, 재무과장, 교수회·직원회·학생회 추천 인원 각 1명



행정·시설위원회

(기능) 통합대학 행정조직·인사 개편안 수립, 캠퍼스 특성화 재배치 계획에 따른 교육 시설·공간 활용 방안 마련

(구성) 위원장: 사무국장

위원: 사회과학대학장, 기획과장, 시설과장, 교수회·직원회·학생회 추천 인원 각 1명



정보화위원회

(기능) 통합대학 학사·행정 공동활용시스템 구축, 양 대학 DB 통합 관리 추진

(구성) 위원장: 정보화본부장

위원: 입학본부장, 정보화기획운영부장, 교수회·직원회·학생회 추천 인원 각 1명

충북대학교-국립한국교통대학교
통합 추진 현황 설명회

통합 추진 로드맵



충북대학교
CHUNGBUK NATIONAL UNIVERSITY

통합 원칙

제 1차 통합추진위원회 심의

(1) 충북대-한국교통대 통합 추진 일정(안)

- 양대학간 통합추진 로드맵 합의 및 명문화

(2) 통합대학 거버넌스(안)

- 총장이 위치하지 않은 캠퍼스(청주 또는 충주)에 캠퍼스 총장을 두고 인사, 행정 및 재정 권한 독립

(3) 통합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(안)

- 분과별 실무위원회 6개 구성(교명선정위, 교육위, 연구산학협력위, 재정협력위, 행정시설위, 정보화위)



통합 추진 로드맵

2024년	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통합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출범 ▷비전선포식 및 지역사회 설명회 등 홍보활동 실시 ▷교수·직원·학생 설명회 등 교내 홍보활동 실시 ▷분과위별 활동 시작 : 의제설정 및 일정 확정
	상반기 (통합신청서 작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분과위별 세부과제 논의 ▷교명선정 논의 ▷유사학과 통합 및 캠퍼스 재배치 계획 수립 ▷분과위별 세부 과제 작성 ▷구성원-지역사회 의견수렴 ▷통합신청서 작성
	통합신청서 제출	
	하반기 (통합심의 및 계획조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교육부 통합심사위원회 대응 ▷통합계획 구체화 및 수정 ▷유사중복학과 통합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▷통합신청서 구체화 및 수정 ▷캠퍼스 특성화 및 재배치 계획,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

2025년	상반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순차적 행정 통합 방안 마련 ▷캠퍼스 배치 예산 확보 및 실행
	하반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통합대학 행정조직계획 수립 ▷캠퍼스별 인사 및 지원계획 수립 ▷교원인사제도(안) 마련
2026년	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임시 행정조직 운영(1차): 입학처 등 ▷행정조직 등 관련 규정(안) 마련
	4월	▷통합대학 신입생 모집계획 보고(대교협)
	5월	▷통합대학 2027년 예산요구서 작성
	하반기	▷임시 행정조직 운영(2차)
	12월	▷조직개편 완료
2027년	3월 통합대학 출범	

[참고] 글로벌대학 혁신이행 협약서

First mover, K-대학을 향한 담대한 혁신 「글로벌대학 30」 혁신 이행 협약

충북대학교, 국립한국교통대학교, 충청북도,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충북대학교 및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글로벌대학 본지정 시 제출한 실행계획(이하 '실행계획' 이라 한다) 이행을 통해 대학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,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혁신생태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- 제1조 (협약 기간) 본 협약은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존속한다. (2023. 12. 1. ~ 2028. 2. 29.)
- 제2조 (글로벌대학)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글로벌대학30 추진 방안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실행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, 다른 글로벌대학들과 협력하여 대학혁신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. 실행계획의 이행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.
 - ① 충북대학교-국립한국교통대학교 간 통합신청서를 2024년 상반기 내에 제출하고 통합 절차를 추진
 - ② 지역 주력 산업 분야 혁신 인재 1,000명 양성
 - ③ 수요 기반 인계 육성으로 졸업생의 지역 정주율 40% 달성
 - ④ 학생 중심의 학사 구조 및 제도 혁신 달성
- 제3조 (지방자치단체) 충청북도는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산학연 지원체계 구축, 지역인재 취·창업 및 정주여건 개선, 맞춤형 특성화 인재 육성 등 행·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.
- 제4조 (교육부) 교육부는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를 「지방대육성법」 제17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고, 동 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한다. 그 중 주요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실행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, 특례 우선 적용, 대안 제시 등을 적극 추진한다.

② 실행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든 통합 추진 대학들의 총 예산 소요액 평균이 일천 오백억원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의 실행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, 대학의 신청을 받아 학교별 역할, 학교 규모, 실행계획의 구체적 방안, 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·연차별 지원액을 결정한다.

- 제5조 (한국연구재단)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글로벌대학 지원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 간 유기적 운영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실행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.
- 제6조 (협약의 해지 등) 글로벌대학위원회가 각종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충북대학교 및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실행계획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교육부장관은 별도의 성과관리 절차를 거쳐 「지방대육성법」 제17조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을 취소하고 동 협약을 해지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충청북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“충북대학교-국립한국교통대학교 간 통합신청서를 2024년 상반기 내에 제출하고 통합 절차를 추진 ”

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 대표가 서명한 협약서를 5부 작성하여 “각 기관” 이 각1부씩 보관한다.

2024. 2. 21.

충북대학교총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충청북도지사

고창민 이승호 김기현

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

이우호 이광복

충북대학교-국립한국교통대학교
통합 추진현황 설명회

「국립대학 통폐합 기준」 주요사항



충북대학교
CHUNGBUK NATIONAL UNIVERSITY

「국립대학 통폐합 기준」 주요사항



☞ 교육부 「국립대학 통폐합 기준」 개정안 고시 ('24. 3. 14.)

주요 내용

연 번	현 행	개 정 안
1	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합하려는 각 대학 총장은 공동으로 "대학 통폐합 신청서, 대학 간 통폐합 합의서, 각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 회의록 사본, 각 대학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"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폐합 신청 -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, 총장과 협의하여 통합대학 출범일을 정하여 함께 통보함 - 통합출범일은 통합 승인 통보일이 속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3월 1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통폐합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교육부장관과 총장이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음

「국립대학 통폐합 기준」개정(안) 주요사항



☞ 교육부 「국립대학 통폐합 기준」 개정안 고시 ('24. 3. 14.)

주요 내용

연 번	현 행	개 정 안
1	< 신 설 >	- 대학은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 통폐합 이행계획을 마련해 교육부장관에 제출하고 이행협약 체결하여야 함. 다만 통폐합 이행계획 마련이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통합 출범일 후 이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
2	행정조직은 통합 전 양교의 총량 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증설할 수 없음	각 대학 내 행정조직 총량에 비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3	연합대학은 개별 대학의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음	< 삭 제 >

「국립대학 통폐합 기준」개정(안) 주요사항



☞ 교육부 「국립대학 통폐합 기준」 개정안 고시 ('24. 3. 14.)

주요 내용

연 번	현 행	개 정 안
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폐합하려는 대학은 캠퍼스별 특성화를 위해 유사중복되는 단과대학은 원칙적으로 통합하여야 함 - 통폐합하려는 대학 간 유사중복학과(학부)는 원칙적으로 모두 통폐합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합하려는 대학은 캠퍼스별 특성화와 대학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통합대학의 단과대학 및 학과(학부) 학사조직을 유사중복학과 등 통폐합, 다른 학과 등 간의 통폐합 및 융합체계로의 개편, 학과 등 체계 폐지 등의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5	통합대학 재학생은 입학대학 학칙을 적용해 졸업하여야 함	통합대학 재학생은 입학대학 학칙을 적용해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충북대학교-국립한국교통대학교
대학 통합 추진 현황
설명회

Q & A

충북대학교-국립한국교통대학교
통합 추진현황 설명회

감사합니다



충북대학교
CHUNGBUK NATIONAL UNIVERSITY